

‘박효랑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전경목*

목 차

- I. 서론
- II. 사건의 전말
- III. 소송상의 문제점
- IV. 결론

[국문요약]

‘박효랑 사건’은 18세기 초에 경상도 星州에서 일어난 한 山訟이 발단이 되어 마침내 私掘과 폭행 및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이다. 이 일은 당시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두 차례나 상경하여 이와 관련된 복합상소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백성들 사이에 널리 膾炙되어 實紀, 傳, 서사한서 및 한글소설 등 다양한 문학작품으로 완성되었으며 그래서 일찍부터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를 법사학이나 역사학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던 바, 필자는 본고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법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단순한 묘지 소송으로 출발한 이 사건이 사굴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고 전국의 유림들이 왜 이 사건에 개입하여 통문을 돌리고 상경하여 복합상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대략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擊錚原情의 제도상 결함이 있었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격쟁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조사를 그 지역의 수령이나 감사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이전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둘째 담당 관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미숙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묘지 소송으로 끝날 사건이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셋째 당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대부분 南人이었던 영남의 유림들은 甲戌換局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이 거의 봉쇄되어 있었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데 이들 중 집권 老論의 희유로 노론으로 黨色을 바꾸는 이른바 ‘新附時論人’들이 있었다. 박경여가 바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신부시론자와 집권 노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남의 유림들이 박효랑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복합상소를 하는 등 여론을 주도하였다. 넷째 조선인들이 심하게 경도되었던 효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효를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결국 정약용의 이야기처럼 남의 분묘를 파내고도 그것이 바로 효의 구현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산송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제어] 산송, 복합상소, 효, 격쟁원정, 사굴, 유림, 신부시론인, 재판

I. 서론

‘박효랑 사건’은 18세기 초에 경상도 星州에서 일어난 한 山訟이 발단이 되어 마침내 私掘과 폭행 및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이 사건은 당시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두 차례나 상경하여 이와 관련된 복합상소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 李光庭이나 安錫徽와 같은 유명한 문인들이 박효랑의 효행을 기리는 敘事漢詩와 傳 등을 지어 이 사건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백성들 사이에 널리 膾炙되었다. 박효랑 사건에 대한 관심은 두 세기가 지난 후에도 지속되어 1934년에는 대구의 在田堂書舖에서 『박효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소설이 출판되었으며 4년 후인 1938년에는 陝川의 尹鐸洙가 박효랑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朴孝娘實紀』를 간행하였다.

박효랑 사건은 이와 같이 實紀, 傳, 敘事漢詩 및 한글소설 등 다양한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었으며 그래서 일찍부터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를 법사학이나 역사학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법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우선 단순한 묘지 소송으로 출발한 이 사건이 어떻게 사굴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전국의 유림들

1) 박효랑 사건은 후대에 實紀, 傳, 敘事漢詩, 小說 등으로 형상화되어 일종의 ‘박효랑 작품군’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박효랑 작품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관해서는 류준경, 「朴孝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참조.

이 왜 이 사건에 개입하여 通文을 돌리고 상경하여 복합상소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유교 이념 그 중에서도 특히孝와 산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그런데 박효랑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당시에 소송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했던 각종 탄원서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원문서들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다만 그 내용이 앞에서 소개한 『박효랑실기』 등에 전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부득이하게 『박효랑실기』를 주된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 자료가 후대에 편찬되었고 다분히 박효랑 측에 우호적으로 서술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및 각종 관련 문집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이용하였다. 아무튼 본고를 통하여 ‘박효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사건의 원인이나 소송상의 문제점 등이 규명되어 조선 후기 사회의 실상을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사건의 전말

1. 入葬과 提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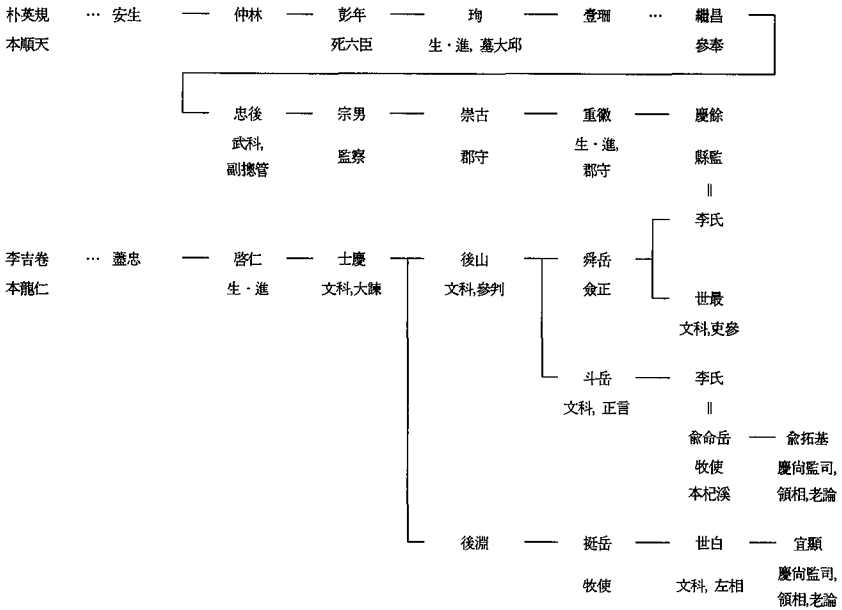
박효랑 사건은 大邱府에 살던 淸安縣監 朴慶餘가 숙종 35년(1709)에 그의 조부를 朴壽河의 先山에 입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박수하의 선산은 경상도 星州에 있었는데 박경여가 박수하와 사전 협의 없이 그의 조부 묘소를 박수하의 선산으로 이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박수하는 박경여를 星州牧과 慶尙監營에 고발하였다. 그때 星州牧使는 金相穆이었고 慶尙監司는 洪萬朝였는데 이들은 모두 박수하에게 패소처분을 내렸다.²⁾

2) 往在己丑歲(肅宗大王卽位三十五年-원주)大邱人朴慶餘 以時任淸安縣監 占山於公(박수하를 지칭-인용자 주)之先壟至近之地 公不能禁 呈于巡營及本官(監司 洪萬朝 本官 金相穆 知禮縣監 洪佑錫-원주) 則方伯守令曲護慶餘(「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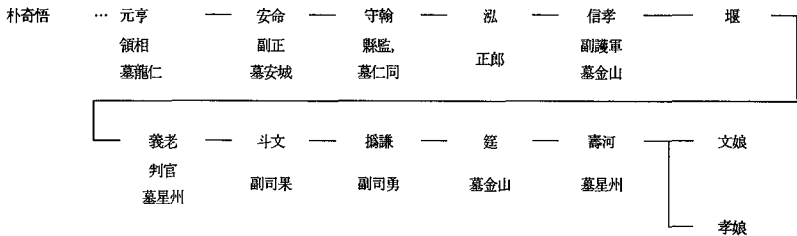
그런데 박수하는 자기 집안에서 선산을 수호해 온 지 이미 60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패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상대인 박경여가 현직관리인데다 당시의 여러 집권자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家勢가 한미한 박수하가 이를 대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아래의 <세계도 1>과 <세계도 2> 참조). 그렇지만 선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기에는 너무 억울한 심정이 든 박수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호소해보기로 작정하였다.³⁾ 이와 같이 결심한 그는 온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경하여 擊錚原情을 하였는데 원정을 살펴본 왕은 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왕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혐의자들을 직접 서울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본도 감사에게 재조사를 명령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국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상감사는 查官을 특별히 임명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웬일인지 이때 임명된 사관이 시일만 질질 끌고 1년이 넘도록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⁴⁾

감사와 본관에 이어 ‘知禮縣監 洪佑錫’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한때 겸성주목사로 임명되어 이 산송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 3) 公(박수하를 지칭-인용자 주) …(中略)… 曰 形勢不敵 難與抗拒 必須擊錚而後 可得伸理矣 …(中略)… 豈可自畫形勢之不敵 而坐失六十年守護之先山乎(『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쪽).
- 4) 遂裹足入京 擊金陳寃 該曹啓下 令本道查處 查官延拖 經年淹滯(『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쪽).



〈세계도 1〉 朴慶餘와 李宜顯의 세계도



〈세계도 2〉 朴壽河의 세계도⁵⁾

5) 世系圖上에 기록된 관직은 족보에는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겼으나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朴守翰과 朴泓이 모두 文科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文科榜目的 급제자 명단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刑訊과 獄死

이 사건은 그 후 2년이 더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자 박경여는 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占有 사실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내종을 시켜 묘소 주위의 松楸를 斫伐토록 하여 墓道를 만든 후 묘비를 세우려고 하였다.⁶⁾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수하는 박경여가 이제는 자신의 선산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서 송추를 무단 작별한 박경여의 사내종을 잡아다 불기를 쳤다.⁷⁾ 그러자 박경여는 자기 선조 묘소에 석물을 세우는 것을 박수하가 방해한다며 그를 즉각 감영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감사는 성주목사에게 關文을 보내어 박수하를 잡아 가두고 조사토록 지시하였다.⁸⁾ 그런데 이때부터 일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하였다. 박수하가 조사를 받던 도중에 성주목사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주목사에게 당시의 감사인 李宜顯이 박경여와 인척간이므로 사건이 공정하게 치결될 지 의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박경여가 이의현의 族叔인 李世最의 姊夫라는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었다(박경여와 이의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의 <세계도 1> 참조). 성주목사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의현은 박수하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판단하고서 격분하여 성주로 달려가 직접 박수하를 刑問하고 하옥시켰다.⁹⁾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수하가 하옥된지 7일만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¹⁰⁾

- 6) 慶餘 …(中略)… 營立石物 使其奴 斫伐松楸(『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쪽). 후에 홍치중은 이에 대해 ‘慶餘家欲修治墓道’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조선왕조실록』 40책, 530쪽, 숙종 40년 6월 9일조 참조).
- 7) 公(박수하를 지칭-인용자 주)尤不勝痛惋 招致慶餘之奴 略施笞杖矣(『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쪽).
- 8) 慶餘百般誣訴於營 方伯李宜顯 卽慶餘之姻親 行關本州 使之捉囚查報(『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1~2쪽).
- 9) 『再巡擊錚原情』에 의하면, 이의현이 성주로 달려와 박수하를 형문한 날은 4월 21일이었다. 廿一日 監司率慶餘 來到星州 施刑矣夫(『박효랑실기』 권1, 8쪽).
- 10) 公(박수하를 지칭-인용자 주)之原情中有曰 聞巡使與慶餘爲姻親 恐不得公正之決云云 方伯託以語侵 馳到本州 重施刑訊 下獄七日 竟殞獄中(『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2쪽). 『再巡擊錚原情』에 의하면, 박수하가 사망한 날은 4월 27일이었다. 박경여는 수하의 사망

3. 私掘과 殺傷

박수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큰 딸인 文娘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하였다.¹¹⁾ 문랑은 자신의 아버지가 獄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박경여의 勒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녀자의 몸으로 멀리 박경여가 있는 곳까지 가서 원수를 갚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박경여의 조부 묘소를 파헤치면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생각한 문랑은 계집종들과 함께 박경여의 조부 묘소를 파서 棺槨이 드러나자 시신을 꺼내어 불태워버렸다.¹²⁾ 그러나 문랑의 예상과는 달리 박경여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할 수 없이 문랑은 관아로 달려가 자신의 부친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박경여를 잡아 가두고 이 사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성주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자신은 그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입지를 받았다.

又於廿七日慶餘 以矣父之受刑 非由於其身 今雖致死 日後勿侵其身之意 來呈立旨於星官 此乃聞矣父垂死之言 自憫其陰囑之罪(『박효랑실기』 권1, 8쪽).

한편 이의현은 이에 대해서 뒷날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 즉 당시 자신은 체직되어 돌아오려고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아서 예에 따라 본관에게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성주목사가 박수하를 잡아다가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수하는 박경여와 감사가 인척이기 때문에 자신의 山地를 빼앗아 박경여에게 주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의현은 박경여가 비록 족속인 李世最의 姊夫이어서 가까운 친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南人이고 또 그의 아들이 閔黯과 李義徵 등과 연달아 혼인하였으며 또 그가 辛巳鞠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박수하가 일부러 至親이라 하여 자신을 욕보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한차례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도 그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陶谷集』 권28, 48쪽 참조.

- 11) 박수하의 큰 딸과 둘째 딸의 이름은 「孝娘事蹟」 등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에서 내린 문문과 이에 관련된 문헌 등에는 큰 딸이 文娘으로, 둘째 딸이 孝娘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에 따랐다. 이에 관해서는 『朴孝娘實紀』에 수록된 「考疑」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蒙旌文字有文娘孝娘之稱 而旌閭額 亦書文娘孝娘之間 文孝二字 果出於何義也 不可考也(『박효랑실기』 권2, 76쪽).

- 12) 伯娘子聞公殞命 …(中略)… 曰我以女子之身 勢難遠赴 刺刀於讎人之腹 吾寧掘其祖 墳火其祖屍 則慶餘必來 來則可圖之 以雪吾父之冤矣 遂率數三婢僕 卽往赴之 親自破掘 …(中略)… 露出棺槨 積柴放火(『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2쪽).

건을 殺獄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이를 거절하였다.¹³⁾

그런데 그로부터 7~8일 후에 박경여가 창검으로 무장한 노비들을 데리고 산에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들은 전해들은 문랑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든 채 말을 달려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문랑은 박경여의 지휘를 받는 그의 노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죽고 말았다. 문랑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그녀의 從祖 朴筵은 곧바로 관아로 달려가 박경여 등을 고발하였다.¹⁴⁾

4. 격쟁원정

문랑이 사망하자 그녀의 동생인 孝娘 역시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언니의

13) 慶餘終無形影 詣官門泣訴曰 慶餘既殺吾父 願速投囚 以成殺獄 …(中略)… 州守 …(中略)… 終不納(『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2쪽).

14) 七八日後 慶餘率槍劒軍數百 來到其山 …(中略)… 娘子即提劒躍馬 突入賊中 慶餘大喝 刀槍軍 衆鋒所擊 流血淋漓 …(中略)… 言訖而終 …(中略)… 時即壬辰五月五日也 娘之從祖朴筵 聞娘子被殺 奔告于主倖(『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2~3쪽).

그러나 이의현은 후일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첫째, 박수하가 죽자 그의 족속들이 분연히 일어나 박경여 조상의 묘를 파내고 그 시신을 불태운 후에 이를 시집도 가지 않은 문랑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효행이 돈독한 문랑이 부친의 죽음을 통탄한 나머지 맨손으로 무덤을 파냈다고 주장하나 박경여가 부유해서 장사를 후하게 지낸 데다가 棺槨에 灰를 바른지 이미 10여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항우와 같은 힘이 있다하더라도 맨손으로는 절대 관곽을 열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의현은 무덤 파내는 일을 전적으로 박수하의 庶叔인 박류와 朴筵이 하고서도 그들이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미 사망한 문랑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죄를 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박경여가 사굴 소식을 전해 듣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달려와 박수하측과 서로 접전을 벌일 때 박수하측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은 문랑을 내세워 이들을 막도록 하였는데 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入葬을 금할 때 항상 쓰는 수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때 박수하의 죽인들이 박경여의 驍族인 就徽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으며 문랑도 박경여측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기 때문에 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의현은 사굴 등을 실제로는 모두 박수하의 서족인 박류와 박첩이 주도하였으면서도 문랑을 앞세워 마치 지극한 효성에서 우리나라와 한 일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양측이 서로 무장한 채 충돌하여 상호간에 살상과 고소가 잇따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陶谷集』 28, 48~49쪽 참조.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효랑은 만일 정식 절차에 따라 성주 관아와 경상 감영에 제소할 경우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살상 사건의 경우에는 수령이 이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과정마다 일일이 감영에 보고한 후 감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견해에 따라 사건 처리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경상감사 李坦이 박경여와 숙질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효랑은 생각하였던 것이다.¹⁵⁾ 그래서 그녀는 궁리 끝에 자신이 직접 상경하여 격쟁원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극구 만류하는 祖母와 繼母를 설득한 후 男裝을 하고서 상경하여 대궐로 몰래 들어가 격쟁원정을 하였다.¹⁶⁾ 그러자 국왕은 이 사건을 본도로 돌려보내어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박경여도 서울에 올라와 격쟁원정을 하였다. 이 사실은 숙종 38년(1712) 5월 22일에 前縣監 박경여가 丹鳳門으로부터 들어와 差備門 밖에서 격쟁을 하였으니 경비를 소홀히 한 守門將 金九鼎을 처벌해야 한다는 건의가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¹⁷⁾ 또 박경여의 친척인 朴文彬도 자신의 부친인 朴就徽가 박문랑의 친척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격쟁원정을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박수하와 박경여 양측 모두 서로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 하자 숙종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명하였다.

15) 當初矣身之來叩天門 蓋出於道臣李坦與慶餘有三寸叔姪之親 引嫌馳啓 終不得按覈之致 (『再巡擊錚原情』, 『박효랑실기』 권1, 6쪽).

그러나 박경여와 이탄이 숙질간이라는 사실을 世系上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이탄에 戊申亂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6) 季娘子見伯娘被殺 泣請于王母及繼母曰 …(中略)… 吾今備陳前後冤狀 上京登聞 則庶可伸雪矣 …(中略)… 到京 變衣服 出入闕下 卽擊錚(『孝娘事蹟』, 『박효랑실기』 권1, 3쪽).

17) 趙道彬 以兵曹言啓曰 今月二十二日前縣監朴慶餘稱名人 自丹鳳門入來 差備門外擊錚 極爲駭愕 令攸司囚禁治罪 同門守門將金九鼎 常時不能禁斷雜人 以致闖入 亦難免其責 推考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468책, 숙종 38년 5월 22일조).

『再巡擊錚原情』에는 ‘得見慶餘之子命恒原情’이라 하여 이때에 마치 박경여의 아들이 원정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추정된다(『박효랑실기』 권1, 7쪽).

18) 『승정원일기』 469책, 숙종 38년 6월 26일조 참조.

박경여의 산송에 대해서는 일찍이 본도로 하여금 엄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어제 박문빈의 원정을 살펴보니 그 부친의 시체를 두 달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놀라고 참담함이 어떠하겠는가? …(중략)… 근래에 타인의 선산을 빼앗는 폐단으로 인하여 시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어찌 박가와 같이 묘지를 파내고 관을 불태우며 사사로이 서로를 살상하는 변란이 있겠는가? 또 근일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살펴보니 혹 세력의 강약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있다. 이번 일은 특별히 申飭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속히 아뢰도록 本道에 다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경상도 감사李坦이 박경여와 친척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박효량은 자신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격쟁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다시 본도로 회송되자 결국 자신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을 것이라며 통탄해 하지 않았다.²⁰⁾

한편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국왕과 대신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²¹⁾ 그 후 領議政 李濡의 건의로 嶺南巡撫使가 海防을 살피러 가는 길에 먼저 星州에 들러 박경여의 산송을 조사토록 하기로 결정하고 순무사에 權愔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순무사에 의한 조사도 중지되고 말았다.²²⁾

19) 趙泰采請對時 上曰 朴慶餘山訟 曾有令本道嚴覈啓聞之命矣 昨見朴文彬元情 則其父屍體 至於兩月不得云 其爲驚慘 爲如何哉 …(中略)… 雖或以病致死 人子之情 猶爲痛迫 而況 被人所害而死者乎 近來奪人墳山之弊 極其紛紜 而豈有朴家塚塚燒棺 私相攻殺之變乎 且 觀近日查事 或以形勢強弱 有若扶抑 今番則別爲申飭 俾無一毫容私 嚴明查覈 斯速啓聞 更爲分付本道 可也(위와 같음).

20) 今有還送本道之令 …(中略)… 道臣李坦與慶餘有三寸叔姪之親 …(中略)… 則今雖還送 本道 誰能按以覈之 明正其罪乎 嫌疑之際 不可不慎 而勒令本道按查者 …(中略)… 此何 政令耶 互相推諉延拖是事 使矣身至冤之痛 終不得伸雪於天日之下(『再巡擊錚原情』, 『박 효량실기』 권1, 6쪽).

21) 『승정원일기』 473책, 숙종 38년 11월 10일조 참조.

22) 濡又請差出嶺南巡撫使 往審海防諸務 而先往星州 按查朴慶餘山訟 上從之 後以權愔差 出 又因諸議不一 終至寢閣(『조선왕조실록』 40책, 474쪽, 숙종 38년 12월 13일조 기사 참조).

박효랑은 사건이 이와 같이 마냥 지연되자 재차 격쟁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자신의 아버지와 언니를 사망케 한 박경여를 법에 따라 처단하고, 둘째 편파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믿고 무고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濫殺한 감사 이의현을 처벌하며, 셋째 박경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언니를 칼로 찌른 박명빈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²³⁾ 그러나 또 한 번의 격쟁원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5. 儒林 通文과 伏閣上疏

한편 박효랑이 두 번째 격쟁원정을 하기 이전부터 영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유림들은 자발적으로 통문을 돌려 박문랑과 박효랑 자매의 효행을 적극 칭찬하는 한편 박경여와 이의현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였다.²⁴⁾ 幼學 鄭昌興 등 경상도 안동에 거주하던 유림 379명은 숙종 38년(1712) 9월에 박문랑의 효행을 높이 칭송하면서 하루 빨리 박문랑이 정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통문을 작성하여 星州 유림들에게 보내었다. 이 통문을 필두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및 충청도의 유림들도 성주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박문랑이 정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문랑의 행동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인물들인 중국의 蘇不韋나 吳子胥의 효행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추켜세웠다.²⁵⁾

한편 이 소송과 관련된 자들이 이미 서울의 刑曹로 붙들려 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承旨 李世最가 “지금 巡撫使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산송과 관련된) 허다한 죄수와 관련자들이 이와 같이 매우 추운 때에 서울에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하고 끼니를 잇기 어려우니 …(중략)… 모두 즉시 본도로 보내어 순무사 일행을 기다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고 있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승정원일기』 474책, 숙종 38년 12월 17일조 참조).

- 23) 同慶餘戕殺二人之罪 依法處斷 以正償命之律 至於監司之偏聽一邊之言 濫殺無辜之罪 明彬之聽其號令 縱恣殺人 亦爲次第勘正(「再巡擊錚原情」, 『박효랑실기』 권1, 10쪽).
- 24) 유림들이 어떠한 계기로 박효랑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본고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아마도 당쟁과 관련이 있는 듯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다.
- 25) 郭林宗曰 伍員因吳 不韋單特 優於員也 …(中略)… 如郭林宗 則皆不曰 孝娘之烈 優於

또 경상도 山淸의 幼學 吳以憲과 固城의 幼學 李聃年처럼 개인 이름으로 성주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박문량에게 정려가 내려지도록 하루 속히 공의를 조성할 것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²⁶⁾

유림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疏廳을 구성하여 伏閣上疏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疏頭는 義城의 金履達이었다. 김이달을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및 경상도의 유림들은 숙종 39년(1713) 3월과 9월에 상경하여 복합상소를 하였는데²⁷⁾ 특히 2차 복합상소에 서명한 유림의 수는 무려 7천여 명이었다고 한다.²⁸⁾ 김이달 등은 이들 복합상소에서 박경여를 엄벌하고 박문량에게 속히 정려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⁹⁾

유림들이 복합상소를 제출하자 승정원에서는 “제차 어사를 파견하여 조사중이므로 獄事가 규명되기 이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 날 성균관 유생 100여 명과 함께 다시 복합상소를 하자 승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³⁰⁾ 승정원으로부터 상소를 전달받아 이를 살펴본 왕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³¹⁾ 그런데 박효량 사건에 대해 유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남의 유림들

不韋也哉(「安東通文」, 『박효량실기』 권1, 14~15쪽).

雖以烈烈大丈夫之雄心 數千百載之下 爲親復讎者 只見鞭屍之伍員·斬屍之蘇子而已 未聞女子之有能辦此者也(「宜寧通文」, 『박효량실기』 권1, 30쪽).

26) 『朴孝娘實紀』 권2, 31~34쪽 참조.

27) 김이달 등이 숙종 39년 9월에 올린 疏에 ‘臣等合辭封章之舉 已過六朔’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이미 3월경에도 한 차례 복합상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박효량실기』 권2, 57쪽).

28) 훗날 대간에서는 김이달 등이 상소에서 趙廣漢을 要斬한 고사를 인용한 점을 문제삼아 疏頭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초야에 있는 사람의 상소 한 두 구절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벌 문제는 곧 종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484책, 숙종 40년 8월 9일조 참조.

조선후기에 영남의 유림들은 몇 차례 ‘萬人疏’를 올렸는데 이 상소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29) 伏願殿下 察其大小輕重之分 斷自洞衷 亟施昭典 褒其所當褒 誅其所當誅 一以扶民彝 一以壽國脉(「疏草」, 『박효량실기』 권2, 58쪽).

30) 『伏閣時同摩錄』을 살펴보면 이때 참여한 성균관 유생들은 130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효량실기』 권2, 59~63쪽 참조.

31) 疏入 政院辭以更遣御史 獄事究竟前 不可捧入云 退却之 翌日又與館學儒生百四十餘人伏

이 적극 나서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영남 유림들이 처해있던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6. 여론 호소와 按覈使 파견

박효랑은 두 번의 격쟁원정이 무위로 끝나자 그녀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 즉 제도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탄원하는 방법 대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울에 있는 여러 函과各司에 청원하기도 하고 또 대신들이 왕래할 때 그들이 탄 수레를 붙들고 泣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을 본 온 장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으며,³²⁾ 그녀의 행실을 전해들은 일반 백성들은 글과 말로서 이를 널리 전파하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고 한다.³³⁾ 당시 세자로 있다가 후에 국왕이 된 영조도 이때 길에서 머리를 풀고 땀을 하며 다니던 효랑을 직접 목도한 바 있으며,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후에 회상할 정도였으니³⁴⁾ 그녀가 아버지와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같이 유생들의 여론이 들끓고 일반 백성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정에서는 서둘러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숙종 39년(1713) 3월에 鄭纘先이 星州別單御史로 임명되었는데³⁵⁾ 성주에 도착한 정찬선은 곧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되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어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와 버렸다.³⁶⁾ 막중한 책

閣 …(中略)… 下批曰 …(中略)… 其令該府該曹稟處(『朴孝娘實紀』 권2, 58쪽).

32) 再度擊錚 猶不得伸 諸宮各司 隨處籲寃 大臣往來攀轅泣訴 都下士女見之者 莫不揮淚稱道(『孝娘事蹟』).

33) 近自本道 遠及兩湖所在數百人 投書以相告 送物以相助 非徒一方 而四方皆然 非徒章甫而阜隸亦然 莫不曰 兩娘之孝當褒 慶餘之罪可殺 至於作爲歌謠 一國傳誦(『疏草』).

34) 上曰 文娘事 予在私邸時 路中見文娘之弟 被髮蒙面 號泣而行 聞其言則皆稱寃之辭也 (『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

35) 吏曹口傳政事 星州別遣御史單 鄭纘先(『승정원일기』 476책, 숙종 39년 3월 30일조).

36) 정찬선이 어사로 성주에 파견되어 부딪혔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는 뒤의 ‘소송의 문제점’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임을 진 별단어사가 이처럼 사건의 단서조차 잡지 못한 채 직무를 포기하고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그를 삭탈관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³⁷⁾

그러자 조정에서는 서둘러서 副應教 洪致中을 어사로 임명하여 성주로 파견하였다. 그가 성주에 파견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숙종 39년(1713) 10월 이전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³⁸⁾ 그리고 그가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다음 해 6월 9일이었다.³⁹⁾ 따라서 그는 만 8개월가량 성주에 머물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셈이 된다. 그가 서울로 돌아와 왕에게 어떤 내용의 복명서 즉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전말’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⁴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건전말’은 그간 관리들이 보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경여가 박수하와의 산송에서 승소하여 그의 조상을 묻고 이어서 墓道를 내려하자 박수하가 이를 저지하였다. 둘째, 박경여가 이를 감영에 고발하자 감사는 관례에 따라 성주목사에게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때 박수하가 감사를 배척하는 말을 하였다. 셋째, 감사가 법에 따라 官長을 무고한 죄로 박수하를 한 차례 刑問하였으나 그가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넷째, 격분한 박수하의 일족이 박경여 조부의 산소를 私掘하고서 처벌이 두려워 문랑에게 自盡토록 했다. 다섯째, 박수하의 친척들이 박경여의 擘族인 朴就徽를 살해한 후 탄로날 것이 두려워 시신을 감추었다. 여섯째, 박취희의 시신을 찾아내어 살펴보니 박수하측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⁴¹⁾

37) 『승정원일기』 480책, 숙종 39년 9월 16일조에 나오는 持平 南道揆 등의 啓 참조.

38) 그가 언제 어사로 임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10월 9일조에 ‘副應教洪致中 方按星州獄事’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이전에 어사로 임명되어 성주에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승정원일기』에는 그가 서울로 온 것이 6월 16일로 기록되어 있다. 星州按察御史洪致中 入來(『승정원일기』 484책, 숙종 40년 6월 16일조).

40) 『조선왕조실록』 40책, 530쪽, 숙종 40년 6월 9일조 참조.

41) 星州人朴壽河 與大丘人淸安縣監朴慶餘爭山 慶餘得勝而用之 後數年 慶餘家欲修治墓道 壽河禁遏之 慶餘舉狀訴營門 監司李宜顯 令本州覈處 壽河供辭 斥宜顯 …(中略)… 宜顯

결국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박수하는 감사를 무고한 죄로 형문을 당한 후 불행히 사망하였으며, 그의 큰 딸인 박문량은 일족에 의해 강요된 자결을 하였고, 박취휘는 박수하측에 의해 살해당한 후 시신이 은폐된 상태였다는 것이다.⁴²⁾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홍치중의 복명서에 의해 사건의 과정이 이와 같이 정리되자 분분했던 여론이 점차 진정되었다.⁴³⁾

7. 사건 종결

사건의 전말이 위와 같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박경여 등의 처벌 문제와 박문량의 정려 포상 문제였다. 중앙의 관리들은 비록 박경여가 산송에서 승소하였지만 그 발단은 박경여의 늑장 때문이었으며 또 살상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데에는 박경여의 잘못이 컸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숙종 40년(1714) 5월 무렵에 박경여를 의금부로 잡아와 감옥에 가둔 채 조사를 하였다.⁴⁴⁾ 그 후 그의 건강이 나빠져서 한 동안 保放하였다가 다시 수감하여⁴⁵⁾ 여러 달에 걸쳐 거듭 조사를 한 후 이듬해(1715) 3월에 告身을 빼앗고 杖 80대를 때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장 80대는 贖錢으로 대신토록 하였다.⁴⁶⁾

據法刑壽河 一次而斃 壽河一家族屬 …(中略)… 詣慶餘父墳 發棺戮尸而焚之 …(中略)… 慶餘之族人就徽 亦被殺而匿其尸 …(中略)… 國法 發塚殺人 俱係死罪 壽河之族 將不得免死 遂令文娘 自刎 …(中略)… 及致中爲御史 …(中略)… 百般機探 數月果得其尸 就徽爲朴女黨所殺明白(위와 같음).

- 42) 홍치중이 뒷날 직접 자신이 按覈한 내용을 영조에게 진술한 바 있는데 그때의 진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는 좀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3) 至是諸議稍定 而文娘殺死 以喉下刃痕 合於『無冤錄』自刎條 諸議漸以文娘爲自死 而猶滯囚不決(『조선왕조실록』 40책, 530쪽, 숙종 40년 6월 9일조).
- 44) 禁府 時囚罪人朴慶餘 方在按覈中 姑爲仍囚 趙成基更推 何如 啓 依所啓施行(『승정원일기』 483책, 숙종 40년 5월 7일조).
- 45) 義禁府啓曰 卽接月令醫員林廷喬手本 則保房罪人朴慶餘 病勢小有減歇云還囚之意 敢啓 答曰 知道(『승정원일기』 484책, 숙종 40년 8월 6일조).
- 46) 禁府照目 …(中略)… 前縣監朴慶餘矣 彼此殺獄之變 本由於慶餘勒葬他人所禁之山 罪杖八十 收贖 追奪告身三等 私罪 啓依允(『승정원일기』 488책, 숙종 41년 3월 5일조).

그런데 박경여측 인물로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의금부에 갇혀 있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朴明彬인데 무려 20년 동안 일종의 미결수로서 의금부에 갇혀 있었다.⁴⁷⁾ 그 혐의점은 박문량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으나, 흥치중이 복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박문량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 그가 살해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다. 만일 박경여가 박문량을 살해토록 누군가에게 교사하였다면 그는 박경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박경여의 가까운 친족이거나 노복일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명빈은 경여와 친분이 아주 먼 孽屬에 불과했다. 그러한 그가 가까운 친족이나 노복보다 앞장서서 산에 올라가, 그것도 평소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던 문량을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량을 살해한 正犯으로 몰려 근 20여 년 동안 미결수로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⁴⁸⁾

영조 5년(1729)에 조정에서 박명빈의 처벌 문제를 놓고 왕과 대신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는데 대부분 그가 저지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和氣를 해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영남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문량의 애석한 죽음에 대해 울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를 징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⁴⁹⁾ 그는 죄없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나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또 유배생활을 한동안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⁵⁰⁾ 그가 언제 유배에서 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이

47) 박명빈이 얼마 동안 수감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영조 2년에 흥치중은 그가 ‘十餘年’ 동안 갇혀 있다고 하였으나 영조 5년에 서명균은 ‘已二十年’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와 677책, 영조 1월 5일조 참조.

48) 致中曰 …(中略)… 明彬則雖謂正犯 以事理言之 設令刺殺文娘 必是慶餘之切族與奴僕而明彬 則不過慶餘之遠孳孽屬 何必挺身先登 手刃於素無嫌怨之文娘乎 常情似無此理 且無殺害之明證 而囚繫十餘年 受刑累十次 其亦可矜矣(『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

49) 이 점은 영조 2년 12월에 조정에서 박명빈의 처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明彬則令本道監司 取其一鄉公共之論 參以道臣已見 詳查啓聞後 該曹議于大臣 稟處 可也(『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

50) 命均(刑曹判書徐命均을 지칭함-인용자주)曰 嶺南殺獄罪人朴明彬 因朴文娘事 囚繫者已二十年矣 …(中略)… 大抵其事 頗涉曖昧 左議政洪致中 則本來稱其冤矣 既知其冤狀 而一

전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한편 박문랑에게는 정려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려를 받은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박효랑실기』에 수록된 「關文」에 의하면, 경종 4년(1724) 윤4월에 慶尙道 兼巡察使가 성주목사에게 關文을 보내어 박문랑의 정려를 지어주도록 하고 또 박효랑에게는 예에 따라 復戶를 해주도록 지시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영조 2년(1726) 12월에 국왕은 다음과 같이 박문랑의 정려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박문랑이 칼을 끼고 말을 달리어 많은 사람들 속에 돌진하는 늠름한 모습은 마치 실상을 보는 듯하다. (그녀의 사적읍) 비록 『三綱行實』에 신는다 하더라도 무슨 손색이 있겠는가? 이를 숭상하고 권장하지 않는다면 그 원통한 혼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이니 특별히 문랑에게 旌閭를 내리도록 하라.⁵²⁾

영조 3년(1727) 정월 10일에 承旨 洪龍祚가 “지난 해 12월 20일에 (임금께서) 문랑에게 특별히 旌表하라고 判下하셨으므로 본도로 하여금 즉시 박문랑의 旌門을 세워주고 보고토록 분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라고 건의하자 왕은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였다고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⁵³⁾ 따라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박문랑에게 정려가 내려진 것은 영조 3년 정월이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관찬 기록과 사찬 기록 사이에 어떻게 이

向滯因 豈不感傷和氣乎 下詢而速賜處分 似宜矣 …(中略)… 上曰 頃日文娘旌表時 亦言之矣 而左相 陳其事始末 故曾已詳聞矣 至今遷就者 爲嶺人多有佛鬱者 故重其事而使之議大臣矣 領相所達又如此 宜傳之生議 而不可全釋 減死定配 可也(『승정원일기』 677책, 영조 5년 1월 5일조).

- 51) 兼使爲相考事 …(中略)… 朴壽河兩女旌表事 其長女因左道御史書啓 請旌旌表之典 其次女誠孝 亦使人感歎 令本道 先旌復戶之典爲白旌「關文」, 『박효랑실기』 권2, 65쪽.
- 52) 上曰 文娘提刃躍馬 馳突千人之中 凜然若見其狀矣 雖載『三綱行實』 何愧之有 此不崇獎 無以慰其冤魂 文娘特旌閭(『조선왕조실록』 41책, 614쪽, 영조 2년 12월 20일조).
- 53) 洪龍祚 …(中略)… 啓曰 去十二月二十日初覆入侍時 文娘則特爲旌表事 判下矣 朴文娘旌門 令本道 卽精造暨立後 啓聞之意 分付 何如 允(『승정원일기』 630책, 영조 3년 1월 10일조).

와 같이 2년여 기간 동안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으나 박문량이 정려를 받은 사실만은 확실하다.⁵⁴⁾

Ⅲ. 소송상의 문제점

박효랑 사건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단락되었다. 이제 소송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박효랑 사건은 산송으로 시작하였는데 산송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나 원인 등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들을 통하여 상당 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⁵⁵⁾ 여기에서는 이 소송에 국한하여 제도상의 미비점, 관리들의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 당쟁의 영향 및 지나친 효의 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하자.

1. 제도상 미비점

박효랑 사건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제도상의 뚜렷한 미비점은 바로 격쟁 원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던 결함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관에 탄원할 일이 있으면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고을의 관아에 가서 1차적으로 탄원하였다. 만일 이 때 만족할 만한 판결을 얻지 못하면 그보다 상급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영에 가서 하소연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리고 감영에서도 역시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上京하여 刑曹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격쟁원정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 소송의 절차요 관례였다.⁵⁶⁾ 그런데 지방민이 격쟁원정을 하였을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해 중앙관서에서 査官을 파견하여

54) 『星州牧邑誌』 「人物」條에도 문량이 정려를 받은 것과 효랑이 復戶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읍지』 1, 209쪽 참조).

55) 산송의 발생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47~82쪽 참조.

56) 박병호,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서울대학교출판부, 1972)과 『한국법제사고』(법문사, 1974) 참조.

직접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부득이하게 해당 감영에 회부하여 철저히 재조사를 한 후 보고토록 하였는데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었다. 재조사는 당연히 감사의 주도로 실시하였는데, 비록 왕명으로 재조사가 지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격쟁원정한 사건에 대해 감사가 스스로 얼마나 철저히 재조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재조사를 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이나 前任者 등에게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들이 재조사에 매우 수동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수하는 박경여가 자신의 선산에 그의 선조를 입장하려 하였을 때 고을과 감영에 제소하였으나 거듭 패소하자 상경하여 격쟁원정을 하였다. 국왕은 이 격쟁원정을 살펴본 후 관례대로 본도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재조사를 명령받은 查官은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⁵⁷⁾ 사관이 이와 같이 조사를 미룬 이유는 기껏 조사해보았자 그의 동료인 다른 고을의 수령이나 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에 사관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조사를 미루었던 것이다.

박효량도 「再巡擊錚原情」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 (사건을) 본도로 환송(하여 재조사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제가 궁궐에까지 와서 격쟁원정을 한 이유는 道臣 李坦과 박경여가 三寸叔姪間이기 때문에 馳啓하는 것을 꺼려 끝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저의 사건이) 본도로 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道臣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을 능히 조사하여 박경여의 죄를 바로 잡겠습니까? 혐의가 있을 때에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은 이 무슨 獄體이며 이 무슨 명령이란 말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로 떠넘기고 (마냥) 미루어서 저의 지극히 원통함을

57) 公(朴壽河를 지칭함—인용자주)不能禁 呈于巡營及本官 則方伯守令曲護慶餘 …(中略)… 遂裹足入京 擊金陳寃 該曹啓下 令本道查處 查官延拖 經年淹滯(「孝娘事蹟」, 『박효량실기』 권1, 1쪽).

결국 伸雪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 망극한 정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⁵⁸⁾

사실 지방민과 관련된 격쟁원정을 처리하면서 중앙에서 일일이 査官을 임명하여 파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대부분 사건을 본도에 회송하되 剛明한 관리를 사관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재조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격쟁원정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 한 이미 본관이나 감사가 판결한 사건이 격쟁원정 과정에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2. 담당 관리의 업무처리 미숙

박수하와 박경여 사이에 있었던 단순한 묘지 분쟁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담당 관리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가 커다란 요인이었다. 訟官 또는 査官들은 산송 초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간혹 정실에 얽매이거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다 사건 처리를 지체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서는 사건의 전개 순서에 따라 경상감사 李宜顯과 성주목사 金相稷, 그리고 안핵사 鄭纘先이 담당 관리로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감사 이의현

앞의 <세계도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박경여는 이의현의 族叔의 姊夫였

58) 今有還送本道之令 當初矣身之來叩天門 蓋出於道臣李坦與慶餘有三寸叔姪之親 引嫌馳啓 終不得按覈之致 則今雖還送本道 誰能按以覈之 明正其罪乎 嫌疑之際 不可不慎 而勒令本道按査者 此何獄體 此何政令耶 互相推諉 延拖是事 使矣身至冤之痛 終不得伸雪於天日之下 罔極之情 無處控訴(「再巡擊錘原情」, 『박효랑실기』 권1, 6쪽).

다. 따라서 법적으로 相避해야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戚分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박경여가 박수하를 감영에 고발하였을 때 혐의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성주목사에게 특별히 관문을 보내어 엄히 신칙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⁹⁾ 이는 그가 박경여의 묘비 건립을 방해하는 박수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박수하가 먼저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경여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묘비 세우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일 박수하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 후에 저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였다.⁶⁰⁾ 그러나 이 사건은 관찰사가 성주목사에게 특별히 관문을 보내어 즉시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전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면 될 일이었다.

또 이의현은 박수하가 감사인 자신을 무고하였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었으며⁶¹⁾ 감사가 욕을 당하면 刑問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⁶²⁾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친 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官長으로서 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불문에 부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단숨에 성주까지 달려가 직접 형문할만한 사안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이의현이 비록 무고를 당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살상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단순한 묘지 분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며 이의현도 이 일로 말미암아 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⁶³⁾

59) 臣在嶺臬時，既以別關嚴飭，使之刻日推出(『승정원일기』 469책, 숙종 38년 6월 28일조). 그러나 후에 이의현은 입장을 바꾸어 이때 자신이 체직하고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을 맡고 싶지 않았으며 그래서 단지 전례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본관에게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時余遞職將歸，不欲擔當，只例題查處二字，付之本官矣(『陶谷集』 권 28, 48쪽).

60) 雖曰壽河之山，彼既決得，則更訟得捷之後，當禁彼之立石，而未然之前，不可沮遏也(위와 같음).

61) 事體所在不可置之(위와 같음).

62) 壽河既已侵辱監司，則監司之刑推例也(『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

63) 그는 후에 이 사건이 크게 확대되자 여러 차례 사직소를 제출했으며 또 이에 대해 변명하

2) 성주목사 김상직

박문량은 복수하기 위하여 박경여 조부의 무덤을 私掘하여 시체를 꺼내 불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여가 나타나지 않자 그를 고발하기 위해 직접 관아로 나아갔다. 따라서 수령인 김상직은 박문량의 고발을 접수하여 박경여의 능장 여부와 감사 이의현의濫刑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문량을 체포하여 사굴한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한 순서요 절차였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회피한 채 관아의 문을 굳게 닫고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양측이 무력으로 충돌하여 사상자가 생기고 마침내 사건이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김상직의 업무 태만 사실을 파악한 사간원에서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계를 올려 김상직을 파직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外方の 獄訟이 소홀히 취급되고 늦추어지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前縣監 박경여의 선산에서 무덤을 파서 棺을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령은 마땅히 즉시 摘奸하고 법에 의거하여 按治해야 하는데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질질 끌어 마침내 양쪽이 싸워 심지어 殺傷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청컨대 성주목사 김상직을 파직하고 敍用하지 마소서.⁶⁴⁾

사간원의 지적과 같이 만일 김상직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박문량과 그의 일족들의 사굴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경여의 능장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규명했다면 박수하에 이어 박문량과 朴就徽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상직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면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는 장문의 글을 남길 정도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

64) 外方獄訟 多有踈緩之弊 前縣監朴慶餘之先山 有掘塚燒棺之事 爲地主者 所當登時摘奸 據法按治 而略不驚動 故爲延拖 終使兩隻鬪鬪 至有殺傷之舉 請星州牧使金相稷 罷職不叙(『조선왕조실록』 40책, 444쪽, 숙종 38년 6월 16일조).

3) 별단어사 정찬선

난마처럼 엮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정찬선을 星州別單御史로 임명하고 현지에 파견하였다. 정찬선은 성주에 도착한 후 반년 가량을 이곳에 머물며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난관에 봉착하자 어사직을 던져버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당시의 상황은 持平 南道揆와 安重弼이 제출한 다음의 啓에 잘 서술되어 있다.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가서 獄案을 조사하는 일은 事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前校理 정찬선은 특명을 받들고 파견되어 반 년간 사건을 조사하다 단서조차 잡지 못했으니 직무를 저버린 책임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옥안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미리 상경하여 疏 하나만 (겨우) 작성하여 제출하고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니 …(중략)… 前校理 정찬선을 삭탈관작해주시기 바랍니다.⁶⁵⁾

정찬선은 박효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어사였다. 그러나 그는 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상경하게 되었는데 그가 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啓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정찬선이 어사로 활동했던 때의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승정원일기』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朝廷에서 어사 정찬선을 (성주에) 보내어 (사건을) 推覈하도록 하였는데, 정찬선은 1

65) 持平南道揆·安重弼 …(中略)… 又所啓 奉命按獄 事體至重 而前校理鄭繼先 既承別遣之命 半年查治 未得端緒 失職之責 已不可勝言 而設令獄情 未易鉤得 惟當條陳稟啓 以待朝令 事理當然 而不此爲之 徑先上來 投進一疏 謾以難覈 …(中略)… 請前校理鄭繼先削奪官爵 『승정원일기』 480책, 숙종 39년 9월 16일조.

년⁶⁶⁾을 머무르면서도 끝내 獄情을 밝히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보다 전에) 嶺南人 金履達 등이 他道의 불량한 무리들을 이끌고 문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소하여 그 효성을 극구 칭송하고 박경여의 죄상을 크게 논박하였다. (또) 이로 인하여 이의현을 마구 헐뜯었으니, 대개 남의 使嗾를 받아 이의현을 構陷하려 한 것이었다. 서울에 있는 士夫들도 간혹 문랑을 위하여 팔뚝을 건어붙이고 칭송했으며, 심지어 朴就徽는 거짓으로 죽은 것인데, 그 아들이 박경여의 핏을 받아 거짓으로 喪服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⁷⁾

위 내용에 따르면 정찬선이 어사로 임명되어 성주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남의 유림 김이달 등이 전국적 여러 유림들과 더불어 복합 상소를 제출하여 박문랑의 효성을 칭송하고 박경여와 이의현의 죄상을 논박하였다. 이 상소로 말미암아 박문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효성을 기리는 여론이 점차 형성되었고 급기야 서울에 살던 사대부들조차 문랑을 칭송하고 박경여를 비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사건을 재조시해야 할 정찬선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점은 영조가 홍치중과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중략)… 문랑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士論은 (자기와 같은 의견을) 부추기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는 데 매우 심하여 만일 어느 한 사람이 문랑이 자살하였다고 말하면 문랑의 효도를 덮으려고 한 다며 공공연하게 (그를) 모욕하고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래서 전후의 推官[御史]들이 비록 의심되는 바가 있더라도 감히 자살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獄事가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왕이 말하기를 …(중략)… 朴明彬의 일은 그 지역 士林들이 가지고 있는 올분 때문에 비록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推官이 감

66) 『승정원일기』에서는 정찬선이 성주에 머문 기간을 ‘반년’이라고 하였다. 앞의 주 64) 참조.

67) 朝廷遣御史鄭纘先推鞫 纘先居一歲 終未鉤得獄情而還 嶺南人金履達等 倡率他道不逞之徒 名爲文娘上疏 極稱其孝 盛論慶餘罪狀 因肆口誣辱宜顯 蓋受指於人 欲構陷宜顯也 洛下士夫 亦或爲文娘 扼腕稱道 至以就徽 爲佯死 而其子爲慶餘所誘 假着喪服云『조선왕조실록』 40책, 530쪽, 숙종 40년 6월 9일조.

히 이를 발설하지 못한다고 하니 당당한 국가의 事體로 미루어 볼 때 어찌 이를 용인할 수 있던 말인가?⁶⁸⁾

홍치중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어사로 파견되었던 정찬선이 중도에 임무를 포기하고 상경한 이유는 박문량을 비호하는 당시의 여론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推官들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양측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박문량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박문량이 박경여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확신하는 영남의 유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바로 그 점이 우려되어 정찬선은 조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상경해 버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영조의 지적처럼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분란을 종식시켜야 할 임무를 띤 推官들이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조사를 중도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감사 이의현과 성주목사 김상목, 그리고 어사 정찬선 등이 그때 그때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 일은 결코 백성에게 회자되는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당쟁의 영향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효랑 사건에 대해 영남의 유림들이 적극 나서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해있던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당시 대부분 南人이었던 영남의 유림들은 숙종 20년(1694)에 일어난 甲戌換局 이후 정치적 진출이 봉쇄되어 중앙정계와 전혀 연결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⁶⁹⁾ 그러던 중 집

68) 致中曰 …(中略)… 文娘之死 人多知其自殺 而嶺南士論 扶抑太過 人或言文娘之自殺 則謂之掩惡文娘之孝 公肆醜辱 衆論譁然 以是前後推官 雖或疑之 不敢謂之自殺 故獄事至今尚未究竟矣 明彬事 因其地士林之齊憤 雖有可疑之端 推官不敢說出云 堂堂國家之事體 豈容如是(『승정원일기』 629책, 영조 2년 12월 20일조).

69) 17·8세기 영남지방 유림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수진, 「17·8세기 안동유림의 정치·사회적 기능」(『대구사학』 30, 1986)과 이태진,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민족

권한 老論들이 점차 영남 유림들을 대상으로 회유를 시작하였는데 영남 유림 중의 일부는 이들의 회유에 넘어가 노론으로 黨色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에 이들을 ‘新附時論人’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중앙 권력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러한 攀緣을 통하여 관직에도 진출하였다. 박경여도 바로 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신부시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남인이었으며 그의 아들도 남인들과 혼인을 하였다.⁷⁰⁾ 그러나 그는 위의 <세계도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상감사로 부임했던 李宜顯, 兪拓基 등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노론이었다. 그의 집안은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벼슬살이를 할 수 있었으며 이미 그의 손자대에는 명실상부한 노론이 되었다.

신부시론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노론의 세력을 믿고 이권에 개입하고 소송을 벌이는 등 지방에서 갖가지 분란을 야기하곤 하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신부시론인이 경상도 안동에서 자신의 세력을 믿고 묘지를 빼앗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신부시론인이 안동 法興에 사는 固城李氏의 묘지를 무단히 빼앗았으나 老論 출신의 府使 덕택에 세 차례나 소송에서 승소하였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후에 金尙默이 부사로 부임하자 이씨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김상묵은 신부시론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신부시론인은 三度得伸法 즉 세 차례 소송에서 이기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인용하고 또 이씨가 戊申亂에 관련된 南人임을 내세워 판결에 반발하였다. 그러자 김상묵은 신부시론인의 조상도 남인임을 주시시키고 곤장을 쳐서 엄히 가둔 후에 묘지를 파 옮기도록 하니 안동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고 한다.⁷¹⁾ 박경여도 여타의 신부시론인들처럼 타인의 산지에 농장을 하고서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박경여의 행동에 대해 유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안동 출신의 유림으로 文名이 널리 알려진 訥隱 李光庭은 박효량 사건을 풍

문화논총』 11, 1990) 참조.

70) 渠以南黨中人 與賊貽義徵連婚其子(『도곡집』 권28, 48쪽).

71)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IV』, 291~292쪽 참조.

자한 장편 서사한시 「昔有蘇不韋行」를 지은 바 있다. 이 시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에서 박경여와 같은 신부시론인들의 행태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⁷²⁾

이름난 名門 출신에다 나라의 큰 富豪
수만금 돈을 이용, 公侯 집안과 連婚하는구나
권세있는 사람에겐 아첨하고 힘없는 사람에겐 이익 취하며
남의 선산 빼앗고도 만족할 줄 모르네
전에는 이씨의 선산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박씨의 산으로 移葬을 하네
하루에도 많은 돈, 남 몰래 사방에 뿌리며
營門도 심복이 되니 그 형세 산과 같아
번갈아 列邑에서 贖儀 보내오며
수령이 오히려 친히 나와 護喪하네⁷³⁾

영남의 유림들은 바로 이와 같이 처신하는 신부시론인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집권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김상목이 신부시론인을 잡아가두고 묘지를 파내도록 하자 안동의 민심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점이나, 어떤 사람이 김상목의 판결에 대해 의아해 하자 김상목이 “내가 영남에 와서 보니 소[牛]와 남인은 토질에 맞고 말[馬]과 西人(그 중에서도 특히 노론)과는 토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영남 유림들이 신부시론인과 집권 노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반감을 읽을 수 있다.⁷⁴⁾ 박효랑 사건도 당시의 이러한

72) 이광정은 박효랑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기도 하고 또 박문랑을 애도하는 弔文도 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류준경, 「박효랑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265~266쪽 참조.

73) 强宗故名家 富豪傾一邦 挾其財鉅萬 連姻通侯公 憑依阿附勢 利人有孤窮 奪其丘與壟 心腸苦不充 初奪李家山 又欲移此岡 一日散千金 無脛走四方 營門爲心腹 形勢如山岳 列邑迭轉贖 守令親送喪 『박효랑실기』 권2, 69쪽.

74)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IV』, 292쪽 참조.

영남유림들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신부시론인인 박경여가 무단히 남의 산지에 농장을 하여 산송을 일으킨 점과, 거기에 노론 출신의 경상감사 이의현이 연루되어 단순한 산송 사건이 살상 사건으로 확대된 점,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집권 노론들이 박경여와 이의현 등만을 감싸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화근이 되어 평소에 신부시론인과 집권 노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영남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통문을 돌리고 복합상소를 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4. 지나친 孝 意識

박효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송이 제기된 후 한 두 차례의 판결로 마무리되지 않고 상고 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과 살상 등이 일어나 견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확대된 데에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리만큼 강했던 효 의식인데 앞에서 거론한 여러 원인들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에는 효가 유난히 강조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儒敎를 國敎로 채택했기 때문에 유교의 기본 이념 중의 하나인 효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유교의 여러 기본적인 이념 중에서 효가 특히 강조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초기부터 관리들은 언제나 ‘孝는 모든 善의 근원이요 온갖 行실의 근본’이라며 효를 강조하곤 하였다.⁷⁵⁾ 온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국왕에게도 효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지배계층들이 효를 유난히 강조한 것은 그것이 곧 또 하나의 유교의 도덕 규범인 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가정에서 효를 행하면 그것이 자연히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였다.⁷⁶⁾ 그러한 까닭에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임금에게 충성

75) 門下府上疏 陳時務十事 …(中略)… 疏曰 …(中略)… 孝者 萬善之原 百行之本(『조선왕조실록』 1, 147쪽, 정종 1년 5월 1일조).

76) 司憲府上疏曰 …(中略)… 傳曰 居家孝 故忠可移於君(『조선왕조실록』 4, 237쪽, 세종 21

하는 사람은 없으며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서 구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⁷⁷⁾ 가정에서 효도를 하게 되면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왕이 효로 나라를 다스리면 신하들이 마치 아버지에게 효도하듯 국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⁷⁸⁾

효가 한 가정의 기본 윤리를 넘어서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자 통치 이념으로까지 인정되면서 사람들은 효를 다른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喪服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박효랑 사건도 바로 이러한 효 의식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즉 자신의 조상을 명당에 묻기 위해 남의 선산에 능장을 한 박경여의 행동이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묘를 파내어 그 시체를 불태운 박효랑의 행위도, 비록 지나친 점이 있으나, 모두 효 의식의 발로였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묘지에 관한 소송은 이미 弊俗이 되었다. 싸우고 구타하는 살상 사건의 절반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남의 분묘를 파내는 變을 스스로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송사의 판결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⁷⁹⁾ 정약용의 이러한 언급이 박효랑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은 적어도 산송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효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년 9월 11일조).

77) 鄭昌孫上言曰 …(中略)… 未有不孝於親而能忠於君者也 傳曰 求忠臣於孝子之門者 以此也(『조선왕조실록』 7, 305쪽, 세조 4년 12월 18일조).

78) 上曰 …(中略)… 大抵 孝乃百行之源 人君當以孝理國 人臣亦以此事君 可也(『조선왕조실록』 15, 232쪽, 중종 11년 11월 2일조).

79)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毆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聽斷不可以不明也(『譯註 牧民心書』 4, 278쪽).

IV. 결론

박효랑 사건은 18세기 초에 우연히 일어난 한 山訟이 발단이 되어 급기야 폭행과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이다.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된 요인들로는 원정 격쟁의 제도상 미비점, 담당 관리의 업무 처리 미숙, 당쟁의 영향 및 지나친 효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동시대인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후세인들에게도 널리 회자되었는데 그것은 박효랑과 그의 언니인 박문랑의 행동이 유럽들을 위시한 당시대인들에게 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묘를 파내고 그 시체를 불태운 박문랑의 행위나 아버지와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상경하여 두 차례나 격쟁원정을 한 박효랑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모두 효 의식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친 것이었으며 특히 박문랑의 행위는 명백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당 제재를 받아야 할 터였다. 아무리 어버이에 대한 효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와 사회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뜻밖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박문랑은 타인의 묘를 사굴하고도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 커녕 오히려 유럽과 관리 및 국왕으로부터 효녀로 칭송을 받았으며 마침내 정부로부터 정려를 받기까지 했다. 또 별단어사 정찬선은 조사를 통하여 박문랑이 自盡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그녀를 효녀로 칭송하는 유럽들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보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조정의 관리들은 박경여 측의 인물인 박명빈이 박문랑을 죽인 정범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들의 눈치를 보느라 20여 년이 넘도록 그가 무고하게 감옥생활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요컨대 박효랑 사건은 사실 효, 즉 가정을 통솔하기 위한 이념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규범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 중의 하나였다. 이 사건은 조선 시대에 효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것이 공공의 질서나 사회의 안녕을 해쳐도 효의 역할이나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산송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산송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당시의 독특한 사회상 중의 하나인 것이다.

The ‘*Park Hyorang* Affair’ and Some Problems related to Her Lawsuit

Chon, Kyoung-mok*

In this study, I researched into the so called ‘*Park Hyorang*(박효랑) affair,’ which was began with a civil suit concerning around a grave site, and brought about grave robbery, violence, and murder eventually. This accident took place in *Sungju*(성주), *Gyeongsang*(경상) Provi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Park Hyorang*, a daughter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suit who was dead in jail during the procession, dug a grave of her enemy’s family for revenge. When she was in trouble for her behaviors, the numerous Confucian scholars of nations petitioned a king in behalf of her, and as the time past she became a heroine of filial piety for ages to come.

Being started as an ordinary suit, what made the affair so sensational? The reasons may be enumerated as follows. (1) There was an inadequacy of code of legal procedure to adjust grave suit. So, the magistrate of that ages had a power to give a decision arbitrarily. (2) There was another defect of unfairness in judicial system. When a dissatisfactory person presented a memorial to the king for his suit, there is every probability that his suit will be allotted again to the higher magistrate who governs the very region of his residence and, therefore, might relate to the former decision directly or indirectly. (3) A number of magistrates made some mistakes in their treatment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is suit. For their frequent faults, the condition of this

* Assistant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ccident grew worse. (4) As a ardent adherent to the filial piety of Confucianism, the people of this period used to do their best for their ancestors, even to dig the graves of other families.

[Key Word] Lawsuit concerning around graves, Memorial to a king, Filial piety, Digging a grave, Confucian Scholars, Trial.